

천곡중 교육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소각,매립) 수의계약 안내공고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7. 8.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합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천곡중 교육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소각,매립)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7.까지

1-3. 용역내용

1-3-1. 건설폐기물(소각): 폐합성수지 15.8 톤, 폐목재 12.2톤, 건설폐기물 운반 28톤

1-3-2. 건설폐기물(매립): 폐유리 4.2톤, 폐석고보드, 폐판넬 2.1톤, 폐타일 6.2톤,
건설폐기물 운반비 12.5톤

1-4. 기초금액: **금12,572,000원(추정가액 금11,429,091원 + 부가가치세 금1,142,909원)**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서보결 ☎052-219-574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7. 8. ~ 2026. 7. 14.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3-3. 개찰일시: **2026. 7. 14.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

-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4-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의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폐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 4-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5-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합니다.
- 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 (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협정서를 최종제출하여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6.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6-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6-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7-6. 견적 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10-1.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서보결 ☎052-219-5746)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민정(☎052-219-5768, kbjj123@korea.kr)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3-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

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기타

- 15-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5-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지원과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